

제 533 호

1975.12.11.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편집 : 문화정보실장 조용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보

차례

● 규칙

제 1538 호	서울특별시 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3
제 1539 호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위원회 규정증개정규정	4
제 1540 호	서울특별시 서정예전 추진위원회 규칙증 개정규칙	4

● 관리규정

제 51 호	(지하철운수사업관리규정) : 서울특별시 지하철 운수중개원 경기규정	5
--------	---	---

● 고시

제 196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	13
제 202 호	1975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고시	15
제 203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16
제 204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19
제 205 호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 및 지적승인	22

(이 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입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공 고

제 292 호	도봉토지구획정리 사업변경 시행인가	
	공람공고.....	23
제 293 호	도시계획시설 (도시고속철도) 실시계획	
	공람공고.....	23
제 294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생산 지정업체	
	대체지정 공고.....	25
제 295 호	교육공무원 공로퇴직 수당지급공고.....	25
제 71 호	(동대문구공고) : 동민방위협의회	
	위원장 공인공고.....	26
◎사 명	31

규
칙

서울특별시 시민회관 사용료징수조례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5년 12월 11일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538 호

서울특별시 시민회관 사용료징수조례
시행 규칙

서울특별시 시민회관 사용료징수조례시
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시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사용
료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한 사용료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개회식 등재물) 조례제 3 조의
허가를 받은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는 사용일 3 일전까지 행사계획서
(집회허가서 첨부) 또는 결연대본(공
연인가서 및 요금인가서 첨부)을
서울특별시 시민회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 (냉난방사용기간) 냉난방 사용기
간은 조례별표 제 3 호에 의한 기간
을 원칙으로 하여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 4 조 (설비 또는 기기 설치) 사용자
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사용
코자 할 때에는 조례제 12 조에 의한
사전허가와 반입시의 경사를 철한 후
사용도록 하여 반출시에는 광장발행
의 반출증을 받아 반출하게 한다.

제 5 조 (부속설비 조명사용구분) 조례별
표제 2 호에 의한 조명장치 사용에
있어 25㎾ 이상 조명을 종합조명이
라하여 소, 무용, 연극, 오페라, 극극
및 이에 준한 공연물에 대한 조명
으로 20㎾~25㎾까지의 조명은 보통
조명이라 하여 학생등 비영리단체에
서 공연하는 공연물에 대한 조명으
로 20㎾ 이하의 조명은 기본조명이
라하여 행사 강연등 및 이에 준한
공연물에 대한 조명으로 한다.

제 6 조 (경기사용료징수) 사용자가 별
도의 전기기기를 반입사용시에는 조
례별표제 1 호에 의한 전기사용률 납

33-4 제 533 호

시

보 1975.12.11

부하여 야·한다.

제 7 조 (입장세 등 예치) 유로로 공
연기 위하여 입장권을 예매할 경우
에는 예매전액에 대한 입장세 및
원전세를 사전에 예치후 예매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위원회 규정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5년 12월 11일

서울특별시 서정해신 추진위원회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5년 12월 11일

○ 서울특별시 규칙제 1540호

서울특별시 서정해신 추진위원회
규칙 중 개정 규칙

서울특별시 서정해신 추진위원회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 (구성) 제 2 호중 "위원회"

다음에 "기획관리판"을 삽입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관리 규정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서울
특별시 지하철 운수총업원 경기 규정
을 이에 발령한다.

○ 서울특별시 규칙제 1539 호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위원회
규정중 개정 규정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위원회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 3 호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요시책의 변동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미리
준설구성이 시의관리판 및 관현국장
의 합의를 거쳐 시장의 방침을 얻
은 때에는 그려 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1975. 12. 25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장

○ 서울특별시지하철운수사업
관리규정 제51호

서울특별시지하철운수종업원경기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지하철운수분야 종업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의무 양양으로 지식과 기능을 향상시켜 열차운전의 안전을 확보하고 역무처리의 신속, 정확을 위하여 여객수송의 안전, 정확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2조(경기의 구분) 경기는 열차운전 경기와 역무경기로 구분한다.

제3조(경기의 시기) 경기는 년 1회로 하여 10월 중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경기일정은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경기의 임원) ①경기를 주관하기 위하여 회장 1명, 부회장 1명과 위원을 약간명을 둔다.

②회장은 운영담당관, 부회장은 운수과장으로 하고 임원은 본부 직원 또는 현업기관 소속직원 중 부회장이 지정한다.

제5조(경기임원의 임무) 회장은 경기사무를 통괄 지휘하며 부회장은

은 회장을 보좌하여 경기전반의 시행계획과 성적의 실사에 입하여 위원은 경기에 관한 일체의 준비 및 경기의 질행사항 실사와 출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2장 열차운전 경기

제6조(경기참가선수의 추천) 승무관리소장은 자체 운전경기를 실시하여 성적 우수자를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제7조(경기의 심사) 경기참가선수는 성적심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조(경기차량의 준비) 경기에 사용하는 전차는 다음 상대로 준비하여야 한다.

1. 운전대 출입문 중앙외판에 백색지팡(가로 30mm 세로 1,602mm)을 수직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2. 속도계에는 덮개를 벌어 실사 위원이 임의로 개폐할 수 있는 장치로 하여야 한다.

3. 정지 위치의 측정역은 회장이

33-6 제533호

시

보 1973.12.11

별도로 지정한다.

제9조(경기참가선수의 실적 및 채점변경) ①경기참가선수가 다음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실적으로 한다.

가. 부정행위가 있을 때

나. 책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②경기중 다음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재경기 또는 채점변경을 할 수 있다.

가. 일가가 불순할 때

나. 경기자의 책임없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제10조(경기의 종목 및 채점) 열차운전경기의 종목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종목별 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별표1에 의한 성적 실사기준에 따라 채점 계산한다.

1. 제동기 취급

2. 기기 취급

3. 운전 시분

4. 운전 속도

5. 출고점검

6. 충전제

7. 정지위치

8. 점무태도

9. 자문

제3장 역무경기

제11조(참가선수자격) 경기 참가 선수는 현업소속장이 3명이하의 인원을 주관해서 경기에 임하여야 하며 참가자격은 지역지도원 이상 간부를 제외한 역무 종사원으로 한다.

제12조(경기과목) ①여객규정, 운전규정, 장표취급규정, 철도법 4종으로 하고 경기참가자는 전 과목을 응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과목은 응용에 의한 필기로 한다.

제13조(명단제출) ①각 현업소속장은 경기 참가자 명단을 경기개최일 10일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명단에는 참가자의 소속, 직위, 생년월일 및 근무년월일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 14 조 (과목 출제내용) 경기 각 과목의 출제내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여객규정 : 운임체산방법, 철 산업·구 개질 찰업부

2. 운전규정 : 열차운행에 관한 취급방법
3. 장표취급규정 : 운수수입 처리 과정
4. 철도법 : 여객운송권, 철도보호

제 15 조 (경기과목의 배점) 역무경기의 종목별 배점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여객규정 150 점 만점
2. 운전규정 100 점 만점
3. 장표취급규정 100 점 만점
4. 철도법 50 점 만점

제 16 조 (체점방법) 경기의 체점계산은 다음과 같다.

각 종목마다 필기시험, 득점과 시가 득점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시가 득점은 필기시험 60점이상 취득한 경우 지정시간보다 빨리 제출한 것에 다음에 대하여 계산한다.

①여객규정장표취급규정 : 1분마다 2점

②운전규정, 철도법 : 1분마다 1점

제 4 장 잡 칙

제 17 조 (경기사항보고) 회장은 각 경기시행후 5일이내에 그 상황 및 결과를 지하철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8 조 (성적우량자의 표창상장) 회장은 각 경기에서 그 성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소속기관에 대하여 시장 또는 지하철본부장 표창을 상신톤 하여야 한다.

제 19 조 (표창자의 인사반영) 관리과장은 각급 경기에서 표창한 개인에 대하여는 근무평정 및 인사고과에 반영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3-8 제 533 호 시 보 1975. 12. 11

열차 운전경기 성적심사기준		
항	목	감 전 기 준
1. 제동기 취급득점 (100점)		
1) 제동기를 사용할 때 제동개시초부터 제동변행률 각도 (SAP 압력 2.0kg/cm ²)를 초과하였을 때	1회에	10점
2) 비상제동을 사용하였을 때 (비상사고 제외)		20점
3) 제동사용 후 제단원해과 제증압을 3회 이상 하였을 때		10점
4) 정차직전 정지위치를 마주기위하여 증압하였을 때		10점
5) 정차시 SAP 압력을 0.5kg/cm ² 이하로 하였을 때		5점
6) ①호의 취급후 발전제동 표시등 점등전에 완해 또는 증압하였을 때		5점
7) 직통대 제동취급이 급격적이라고 인정되었을 때		3점
8) 제동사용으로 차운화주시		10점
9) A.T.S 경보시 소내에 조치를 하지 못하여 비상제동이 해결되었을 때		20점
2. 운전조종 및 기기취급 득점 (100점)		
1) 제동을 완해치 않고 주간제어기를 상승시켰을 때		5점
2) 출발전호 "부자" 취역후 3초이내에 시동치 않았을 때	매초마다	5점
3) 열차운전 정차전에 출입문을 열었을 때	1회에	10점
4) 열차정차후 2초이내에 출입문을 열지 않았을 때	2초초과하였을 때마다 1초마다	1점
5) 출입문폐쇄후 3초이내에 출발전호 "부자"를 하지 않았을 때		
6) 소정 정차시분을 5초이상 단축시켜 출입문을 폐쇄하였을 때	5초초과시에 1초마다	1점
7) 시동후 25K/H 이하에서 주간제어기를 3초치이상 상승시켰을 때 (강제가선구간)	1회에	5점

제 533 호 시 보 1975.12.11 33-9

항	목	감 선 기 준
8) "늦치"에서 40초이상 운기하였을 때		40초초과시에 20초마다 2점
9) 타행 표지 지점에서 주간 계어기를 OPP로 하지 않았을 때		1회에 5점
10) 교직 "색손" 구간에서 ADS 스티치를 결환하지 않았을 때	#	20점
11) 교직 "색손" 구간에서 역행...지전 방에서 역행취급을 하였을 때	#	5점
12) 교교 "색손" 지점에서 주간계어기를 OPP로 하지 않았을 때	#	20점
13) 운전사가 운전대에서 이식할 때 주간계어기를 쇄정치 않았을 때		
14) R_1 또는 R_0 신호천시로 사전 차지 않고 비상제동이 체결되었을 때	#	20점
15) R_1 또는 R_0 천시로 일단정차후 진입 시 소정스위치를 취급치 않았을 때	#	20점
3. 운전시분 득점 (100점)		
1) 구간 운전시분보다 조작 또는 지착하였을 때		
조작 15초 초과시		예 5초마다 1점
지착 15초 초과시		예 5초마다 2점
2) 열차지역시분을 회복하였을 때		예 5초마다 2점
가. 예고없이 회복하였을 때에는 조작으로 간주한다.		예 득점가산
나. 예고후라도 회복예고시분보다 조작 또는 지착하였을 때는 전(1)을 적용한다.		" "
다. 서행으로 인한 지역은 제외된다.		

33-10 제 533 호

시 보

1975.12.11

항	목	감점기준
4. 운전속도 득점 (100점)		
1) 제한속도를 초과하였을 때		초과 2 / 시마다 5점
2) 청거장진입속도가 35km/h 이하로 저속도일 때		저하마다 1점
3) ATS경보속도를 초과하여 경보 "차임벌"이 울렸을 때		1회에 5점
4) 서행개소에서 지정속도를 감속함에 있어 방법이 특히 불량하다고 인정될 때		"
5) 운전속도를 단축시켜 속도계 표시와 과부속 2km/h 일 때		1회마다 3점
5. 충격득점 (100점)		
1) 충돌의 대소는 충격측정기에 의하여 감정한다. 다만 상하 혹은 좌우동과 전일시의 기계적충동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1호주전도하였을 때	2호주전도하였을 때	1회에 2점
3호주전도하였을 때	4호주전도하였을 때	
5호주전도하였을 때		
다만 2이상이 동시에 전도되었을 때는 상호호주의 점수로 한다.		
3) 측정기의 규격 및 재질		
1호주 (30 × 13 × 75)	2호주 (30 × 13 × 70)	
3호주 (30 × 13 × 65)	4호주 (30 × 13 × 60)	
5호주 (30 × 13 × 55)		
(※) 재료는 "나왕" 목재로 하고 표면은 유리로 된 장지판 370×150 로하고 측정시는 쇄후부 차량의 운전대 중앙에 설치하도록 한다.		
6. 정지위치 득점 (100점)		
정지위치 측정지정역에서 지정 장위 위치와 실제 정차위치와 실제 정차위치의 차가 30cm를 초과하였을 때		매 10마다 2점

항	목	감점기준
7. 침투태도득점 (100점)		
1) 장내, 출발, 일환 신호기의 신호확인시 지적환호를 결하였을 때	1회에 2점	
2) 1호이외의 신호확인시 환호를 결하였을 때	" 1점	
3) 각종 운전취급지시표지 (타행, "행, 사구간 예고표지 등)에 대하여 확인환호를 결하였을 때	" 1점	
4) 운전대 출입문 표지등에 대한 지적환호를 결여하였을 때 (점등, 소등)	" 2점	
5) 출입문 자축표지등에 대한 지적환호를 결여하였을 때	" 2점	
6) ATS 15 K/H 및 ASOS 스위치 취급시 지적환호를 결여하였을 때	" 2점	
7) 15 K/H 스위치로 운전시 기동을 결여하였을 때	" 5점	
8) 판타그라프 및 MCB 스위치 취급시 지적환호를 결여하였을 때	" 5점	
9) 제동면 수입후 ATS전원표시등에 대한 지적환호를 결여하였을 때	" 2점	
10) 출고점검시, 기능시험시 환호를 결여하였을 때 (전진, 후진)	" 2점	
11) 교지 "색온" 운전시 MCB차단 및 투입에 대한 지적환호를 결여하였을 때	" 5점	
12) 기타 지정된 환호를 결여하였을 때	" 1점	
13) 승무출무 점검상태 및 운전전 담판제작인이 적당치 못할 때	" 5-10점	
14) 출입문 폐쇄전호 각 취명을 결여시	" 2점	

33-12 제 533 호

시 보 1975.12.11

항	목	감점기준
8. 출고점 사항점 (100점)		
1) 제동면 부입시 축전지 전입확인을 결여하였을 때	1회에 5점	
2) ATS 15 K/H 스위치 ASOS 위치에 대한 시험을 결여하였을 때	5점	
3) Aux Complearer 가동을 결여하였을 때	5점	
4) 제동기 시험방법이 적당치 못할 때	5-10점	
5) 운전대의 각종 "스위치" 상태의 확인을 결여하였을 때	" "	
6) 무전기 및 차내 전화기의 시험을 결여하였을 때	5점	
7) 제동통 앵점 및 제동자 상태확인을 결여하였을 때	1대차마다 1점	
8) 공기압축기 및 주변압기유 및 온도상태의 확인을 결여하였을 때	1회에 2점	
9) 예비휴-즈 정비상태 검사 결여	" 5점	
10) 연결기 및 잠바선 상태 점검 결여시	" 2점	
11) 비품점비상태 확인결여 (복선기, 중간연결기, 디스콘트 소화기 등)	" 2점	
12) 조명장치, 냉난방장치 점검 결여시	" 5점	
13) 출입문 개폐기능 검사 결여시	" 10점	
14) 기동시험을 결여시	" 5점	
15) 수용제동기 차운지의 완해 및 철거결여시	" 5점	
16) 한쪽 운전대만 시험 및 점검 하였을 때	" 20점	
17) MG, CM의 운전상태 확인 결여시		
9. 시 분 득 점 (100점)		
기술 및 규정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구두시험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제533호

시

보 1975.12.11 33-13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196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

1.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과 전설부고시 제

123호(73.4.4)의 관한 위임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한다.

2. 본계획도사는 서울특별시청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사무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12. 1

서울특별시장
가. 노선조사서

노 선 조 서

구분	동급	류별	번호	북 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신설	소로	1	1	10	1.080	성내 74-1	충남 240	
신설	소로	2	1	8	362	" 96	" 136	
			2		132	충남 168	" 222	
			3		620	" 202-2	" 137	
			4		180	" 287	" 228	
			5		506	" 227	" 260-4	
			6		264	성내 111-3	성내 126-1	
			7		268	" 142	" 294	

0167

33-14 재-533호

시

보 1975.12.11

구분	등급	유별	번호	복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소로	3	1	6	120	274	충남 206-3	충남 268-9	
					192	성내 329-1	" 340	
					442	" 319-3	" 356	
					446	" 270	" 352	
					274	천호 464-5	천호 464-18	
					264	충남 95-1	" 123-2	
					132	" 119-3	" "	
					228	" 94-13	" 87-7	
					82	" 82-11	" 81-2	
					174	" 60-1	" 82-4	
					446	" 126-109	" 165	
					144	" 186-1	" 176	
					250	" 195-4	" 174-3	
					205	" 175	" 220-1	
					490	" 153-2	" 126-47	
					120	" 142-44	" 142-2	
					110	" 142-2	" 147-2	
					142	" 187	" 165	
					112	성내 98	광로 19	
					222	충남 220-1	충남 260-1	
					42	" 223-1	" 223-1	
					460	" 165	" 259-5	
					510	" 163-2	" 259-5	
					590	" 3043	" 23-1	

제 533 호

시

보

1975 33-15

구분	등급	유형	번호	쪽면	연장	기 결	총 결	비고
			22		160	충 남 206-1	충 남 282	
			23		240	" 283	" 306-4	
			24		228	" 277-1	" 261-1	
			25		250	성 내 116-5	성 내 294	
			26		240	충 남 263-1	충 남 224-5	
			27		250	" 306-3	" 268-7	
			28		160	" 268-4	" 287-2	
			29		208	" 268-2	" 324-1	
			30		370	" 263-2	" 268-9	
			31		70	성 내 323	성 내 300-2	
			32		614	" 300-2	" 265	
			33		720	충 남 237-4	" 350	
			34		140	성 내 318	" 315	
			35		140	" 318	" 313-2	
			36		290	" 296	" 311	
			37		424	" 293	" 353-2	
설	설	소로	4	1	4	충 남 68-2	광 도 19	
			3	38	6	충 남 258-2	충 남 277-2	

○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 호

1975년도 제 3회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 14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1975년
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각 특

별회계 제 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
산을 지방자치법 제 14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차 준

1975.11.19

33-16 제 533 호 시

보 1975.12.11

회 계 번	예 산 액
총 계	165,766,457
일 반 회 계	101,547,790
특별회계	64,218,667
주 택 사업비 특별회계	10,705,886
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12,199,000
하수처리장비 특별회계	1,489,060
건설자재생산비 특별회계	1,518,268
유료도로비 특별회계	942,441
시민회관비 특별회계	2,378,688
청소비 특별회계	5,736,302
재해구호비 특별회계	104,274
수도사업비 특별회계	18,970,390
지하철운수사업비 특별회계	10,174,358

○ 서울특별시고시제 203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1. 건설부고시 제 2948 호 (66.6.21)

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

업(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동법제 26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123 호 (73.4.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

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에게 보아게 한다.

1975.12.10.
서 울 특 별 시 장

제533호

시

보

1975 33-17

1. 사업시행의 위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유동	5. 낙수및 준공예정일: 75.9.20 ~ 76.12.20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4.19 공원입구 도로정비공사	6. 사용 또는 수용할 계산의 소재지 :별첨
3. 사업규모: 폭: 8~10m, 연장: 1,355 m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보유수율 법 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인 주소성명: 별첨 도지조서
4.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장	

토 지 조 서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 유 자			관계인
		지번	지목	지적	지 번	지 목	지 적	주	소	성 명	
1	수유동				280-55	대	12	동승동 4-8		김현자외 2인	
2	"				280-56	"	18	"		"	
3	"				280-57	"	11	수유농산 1		이우보	
4	"				280-58	"	11	수유동 280-11		김재순	
5	"				280-59	"	11	수유동산 1		봉세현	
6	"				280-60	"	10	수유동 279-203		최동철	
7	"				279-291	도	212	인천시신흥동 2가 54		장수근	
8	"				535-244	대	25	제기동 226		이달우	
9	"				535-245	"	21	수유동 535-73		박정현	
10	"				535-246	"	22	수유동 535-74		최종현	
11	"				535-247	"	25	종로 2 가 23		김화순	
12	"				570-36	"	9	수유동 570		김광현	
13	"				568-44	"	14	수유동 568-28		장동율	
14	"				568-45	"	6	수유동 568-17		서상준	

33-18 제 533 호 시 보 1975.12.11

순위	소재지	분할전 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15.	수유동				568-46	대	0.6	수유동 568-8	박의덕	
16.	"				568-2	"	18	수유동 560-2	안동하	
17.	"				568-15	"	1.1	수유동 560	안주호	
18.	"				568-5	"	5.4	수유동 560	"	
19.	"				568-49	"	20	수유동 560	"	
20.	"				568-50	"	17	수유동 568-27	이석규	
21.	"				568-51	잡	10	신당동 573-10	박정순	
22.	"				568-52	대	30	신당동 52-82	조용구	
23.	"				568-53	"	24	신당동 52-82	"	
24.	"				568-54	"	19	수유동 산 38	문경호	
25.	"				567-53	"	10	신당동 52-82	조용구	
26.	"				563-59	잡	16	하월곡동 68-2	안수명	
27.	"				563-61	"	0.8	하월곡동 68-2	"	
28.	"				563-4	대	81.6	수유동 349	오용택	
29.	"				563-64	"	0.6	수유동 563-33	이성용	
30.	"				563-65	"	17	수유동 563	최동덕	
31.	"				563-66	"	24	수유동 563	"	
32.	"				563-67	"	46	명륜동 1가 88-6	김동자	
33.	"				563-68	잡	19	수유동 563	김기원	
34.	"				563-69	대	58	수유동 280-17	이상언	

제 533 호

시

보

1975.12.11 33-19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지적	지 번	지 목	지적	주 소	성 명	
35	수유동				563-70	작	34	하월곡동 68-2	안수경	
36	"				563-71	작	23	"	"	
37	"				563-72	"	14	수유동 563-11	서영식	
38	"				563-56	"	2	신당동 73-10	박정순	
39	"				564-11	진	3	녹번동 118-1	모명선	
40	"				564-12	"	2	"	"	
41	"				563-6	대	36	수유 563	김기원	
42	"				산2-12	임	541		고본정일	
43	"				산73-7	"	573	안암동 482-21	전원식	
44	"				산73-8	"	244	신문로 2가 1-121	이성일	
45	"				산73-9	"	330	"	"	
46	"				산32-2	"	14	수유 32	박동국	
47	"				279-279	대	37	미아동 550-35	김옥순	
48	"				279-278	"	103	수유동 279-40	유원근	
계	48 필지						2,781.10			

①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4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1. 건설부고시 제 2948호(66.12.17)
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동법 제 26 조 및 전설

부고시 제 123호(73.4.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

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975.12.10
서울특별시장

33-20 제533호 시 보 1975.12.11

1. 사업시행의 위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유동	5. 학수 및 준공예정일: 75.9.15 ~ 76.12.30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삼양로 (가오교~4.19 공원입구간) 도로 확장공사	6.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별첨
3. 사업규모: 폭: 20m, 연장: 830m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성명: 별첨 토지조사
4.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장	

토 지 조 서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서		분할후표서			소 유 자		관계인
		지번	지목 지적	지 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1	수유동			279	도	1	수유동 279-1	최상필	
2	"			278-16	"	2	중구소공동 45	대한주택공사	
3	"			278-17	"	3	수유동 280-23	장광천	
4	"			277-8	대	236	중구월동 2가 83-1	이정은	
5	"			320-2	전	442	수유동 38	허준	
6	"			321-2	"	198	"	허준	
7	"			318-9	대	39	돈암동 294-28	최순근	
8	"			317-17	"	21	"	"	
9	"			316-5	"	45	수유동 327-1	이병학	
10	"			316-7	도	8	"	"	
11	"			316-8	대	80	"	"	
12	"			330-2	전	2	안암동 41-8	강주희	
13	"			331-4	답	163	수유동 195	김호진	
14	"			332-8	전	8	청운동 15-13	조정준	

제 533 호 시 보 1975 12.11 33-21

순위	소재지	분할전토지			분할후토지			소유자	성명	관계인
		지번	세목	지적	지 번	지목	지적			
15	수유동				333-2	대	76	수유동 333	이복순	
16	"				334-37	"	39	수유동 341-17	송광호	
17	"				338-36		51	수유동 338-6	이율근	
18	"				338-37	"	41	원효로 2가 2-13	송영걸	
19	"				338-38	"	73	비아동 534-16	원남균	
20	"				341-19	도	16	수유동 245	송광호	
21	"				340-6	전	24	수유동 359	박영근	
22	"				339-4	대	91	율지로 3가 291	김청자	
23	"				372-13	"	7	서대문구 병천동 171-1	황명연	
24	"				372-5	"	69	성동구 산당동 181	최필동 외 38인	
25	"				370-1	"	25	수유동 372	권광택	
26	"				338-39	"	3	수유동 343-2	강선동	
27	"				372-16	"	4	수유동 45	박남득	
28	"				370-7	"	3	수유동 345-2	김예원	
29	"				370-8	"	2	수유동 370-4	신충현	
30	"				367-6	"	5	수유동 367-1	대일산업 주식회사	
31	"				370-3	"	67	수유동 370-5	이태준	
32	"				381-4	"	30	수유동 381-2	박준현	
33	"				383-3	"	37	수유동 45	박창운	
34	"				385-9	"	46	수유동 385-1	서영열	
35	"				382	전	2		김종근	
36	"				339-1	"	29	수유동 371	손수만	
37	"				340-1	대	137	수유동 245	송광호	

33-22 제 533 호

시

보 1975.12.11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지적	지 번	지 목	지적	주 소	성 명	
38	수유동				341-1	대	72	수유동 245	송광호	
39	"				332-7	전	48	청울동 15-13	조정순	
40	"			277-38	대	186	종로구 천지동 48-4	주식회사 신국 운행		
41	"				285-2	전	3	성복동 83-17	체영철	
42	"				284-1	"	3	수유동 38-1	박남숙	
43	"				278-14	대	8	수유동 산 2	임남현	
44	"				278-13	"	30	가평군 하면현리 263	최월순	
45	"				278-12	"	25	수유동 278-1	안성란	
46	"				278-15	"	3		국유지	
47	"				278-10	"	20		"	
48	"				39-21	전	52	금정동 77-2 둔의동 125-3	박문상 홍무동	
계	48 필지						2,486			

⑤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5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적승인

1.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시내버스 주차장)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123호(73.4.4)의 권한 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12. 12

서울특별시장

가. 주차장 결정 조서

위 치	면 적	비 고
도봉구 상계동 1138-5 및 1132-57 도봉구 우이동 180-1	신설 : 5,084 m ² 기정 : 4,482.5 m ² 추가 : 921 m ² 확정 : 5,403.5 m ²	도시계획 도로계획

※ 별첨 : 도면 표시와 같음(도면 생략)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 제 292 호

도봉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 시행
인가공람공고

1.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 공고 제 127호(75.12.2)로 사업변경 인가 공고된 도봉토지구획정리 사업 변경 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당시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와 관할구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975. 12. 12.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개요

- 1) 사업명: 도봉토지구획정리 사업
- 2) 시행지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일부

3) 시행자: 서울특별시장

4) 변경사항(시행면적)

지구명	당초	변경	비고
	면적	면적	면적
도봉	2,685.648 m ²	2,511,912 m ²	113,736 m ²

나. 유의사항

- 1) 변경인가로 인한 금번 도봉지구내 일부 척적된 지역은 일반지구로 도시계획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되며
- 2) 이 공고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겠으나 송달이 되지 않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 공고로 가름합니다.

◎ 서울특별시 공고 제 293 호

도시계획시설(도시고속철도)

실시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 고시 제 123호(73.4.4)로 결정 고시된 용두동·갈심리지내 1호선 인입선 시설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법

33-23 제533호

시

보 1975.12.11

제 25조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 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 반의 공탁에 중한다.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호선 인입선
2. 본래도서는 지하철본부 건설과에 비치하여 공탁에 중하며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마로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 가를합니다.	3. 사업의 규모 : 인입선 = 9.6 = 1,105 지상정차장 = 20 = 210
1975.12.10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장 (실시 계획 개요)	5. 사업의 확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 확수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7 일이내 준공 76.12.31
1. 사업시행처 : 동대문구 용두동 75-1 12호 - 달심리동 525 지내	6. 위치도 및 계획면도 : 지하철본 부 건설과 비치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의 조사 및 지번 지목과 소유권 이 의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수 용 할 도 지 조 서

번호	원				수 용					
	지	독	지	적	지	번	지	목	지	적
1	성동구 용답동 172-2	대	70.2		성동구 용답동 172-5		대	10.3		
2	성동구 용답동 175	대	443.1		성동구 용답동 175-2		대	116.7		
제										
135.7										
소 유 자										
주 소					비 (구 번 지)					
경기도 양주군 내면 고산리 16 서대문구 순화동 7번지의 17 경기도 양주군 내면 고산리 16 서대문구 순화동 7번지의 17 경기도 양주군 내면 고산리 16 서대문구 순화동 7번지의 17					조 호 능	동대문구 용두동 694-3				
					이 해 승	동대문구 용두동 695-1				
					조 호 능					
					이 해 승					
					조 호 능					
					이 해 승					

제 533 호 시

보 75.12.11 33-25

⑤ 서울특별시공고제 294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률 생산
지정업체 대체 지정공고 당시에서
지정한 수출률 생산 지정업체중 소
계자 변경 및 회사명이 변경된 다

을 업체를 중소기업 수출률 생산
지정업체 지정 및 자금지원요령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 지정공
고한다.

1975.12.11

서울특별시장

다 음

공인

현 지 정				대체 지정		
지정번호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지정번호	변경내용	비고
317	부영전자 공업(주)	최윤용	동대문숭인동 183-13	107	종로구 숭인동 183-13	행정구역 개편
319	화전실업 (주)	박종화	동대문숭인동 204-11	108	종로구 숭인동 204-11	"
328	(주) 유미 양행	진성준	동대문창신동 447-12	109	종로구 창신동 447-12	"
484	상보염직 공업(주)	조동식	성동구 성수2가 277-124	484	상보염직(주)	상호변경
490	화성섬유 공업사	권오성	성동구 농동 451-1118	317	동대문장안동 76-5	행정구역 개편
618	남양물산 (주)	홍건선	서대문신영동 239-5	110	종로구 신영동 249	"
903	광동제약 (주)	최수부	영등포구 흥615-1	903	영등포구 구로동 212-13	소재지 변경
485	동립양말 공업사	이봉엽	성동구 성수동 1가 527	921	영등포가리봉 470-8	소재지 변경

⑥ 서울특별시공고제 295 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교육공무원공로퇴직수당
지급공고

교육공무원
공로퇴직 수당 지급규
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
무원 공로퇴직 수당 지급에 관한

1. 수당지급 대상자
공립 초, 중등 교원으로서 지급
일 현재 다음 연령과 경력에 해당
하는 자
가. 연령
1) 60세 이상

33-26 제 533 호

시

보 75.12.13

<p>2) 신체정신상 장애로 퇴직을 원하는 자는 55세 이상</p> <p>나. 경력 (교육경력, 교육연구, 교육행정경력 통산)</p> <p>1) 30년 이상</p> <p>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20년 이상</p> <p>(1) 재직중 훈장을 받은 자.</p> <p>(2) 재직중 각급 기관의장의 표창을 받은 자</p> <p>(3) 재직중 도단위 이상의 공인된 단체의장의 표창을 받은 자.</p> <p>2. 수당지급일 : 1976년 2월 28일</p> <p>3. 신청기간 : 1976년 1월 18 ~ 1월 27일 (10일간)</p> <p>4. 신청절차</p> <p>소정 신청서에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소속기관 및 강독장을 거쳐 시·도 교육감에게 제출한다.</p> <p>5. 지급액</p> <p>기준 호봉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다 지급배수를 증한 금액</p> <p>6. 지급절차</p> <p>가. 대상자 결정통지</p> <p>지급대상자의 근무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구청장에게 통지한다.</p> <p>나. 수당지급장소</p> <p>소속기관의 소재지를 편할하는</p>	<p>교육청 또는 교육위원회</p> <p>7. 기타사항</p> <p>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교육구청 또는 당 교육위원회에 문의할 것.</p> <p>1975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p> <p>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제 71호 동민방위협의회 위원장 공인 공고</p> <p>민방위 기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동민방위 협의회 위원장 공인을 신조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p> <p>1975. 12.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박용희</p> <p>다음</p> <p>1. 공인의 명칭 신설동 민방위협의회 위원장 인(印)</p> <p>용두제 1동 "</p> <p>용두제 2동 "</p> <p>제기제 1동 "</p> <p>제기제 2동 "</p> <p>제기제 3동 "</p> <p>전농제 1동 "</p> <p>전농제 2동 "</p> <p>전농제 3동 "</p> <p>전농제 4동 "</p> <p>답실제 1동 "</p> <p>답실제 2동 "</p>
--	---

제533호

시

보 1975.12.11 33-27

남 신리제 3동	민방위협의회 위원장 일 (재인)
남 신리제 4동	민방위협의회 위원장 일 (재인)
장 안 동	민방위협의회 위원장 일 (재인)
청 봉리제 1동	민방위협의회 위원장 일 (재인)
청 봉리제 2동	민방위협의회 위원장 일 (재인)
화 기 동	민방위협의회 위원장 일 (재인)
휘 경 동	민방위협의회 위원장 일 (재인)
이문제 1동	민방위협의회 위원장 일 (재인)
이문제 2동	민방위협의회 위원장 일 (재인)
이문제 3동	민방위협의회 위원장 일 (재인)
민 육제 1동	민방위협의회 위원장 일 (재인)
민 육제 2동	민방위협의회 위원장 일 (재인)
민 육제 3동	민방위협의회 위원장 일 (재인)
민 육제 4동	민방위협의회 위원장 일 (재인)
민 육제 5동	민방위협의회 위원장 일 (재인)
상 풍 동	민방위협의회 위원장 일 (재인)
죽 동	민방위협의회 위원장 일 (재인)
망 우 동	민방위협의회 위원장 일 (재인)
신 대 동	민방위협의회 위원장 일 (재인)

2. 공인의 일정 (별첨)

3. 사용개시년월일자 : 1975.12.10 09:00

0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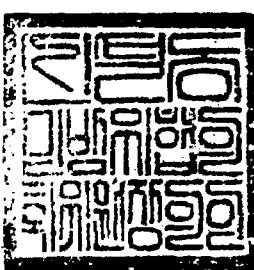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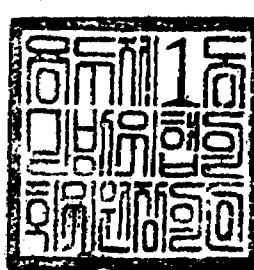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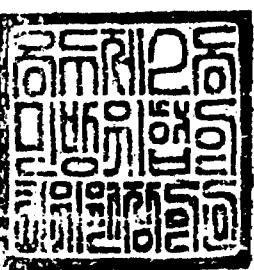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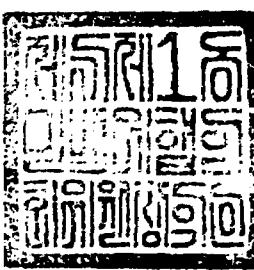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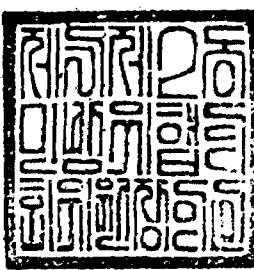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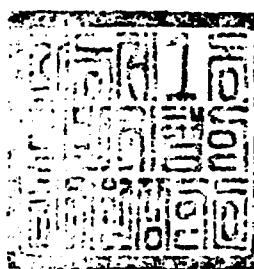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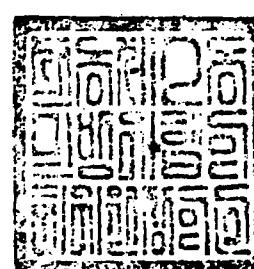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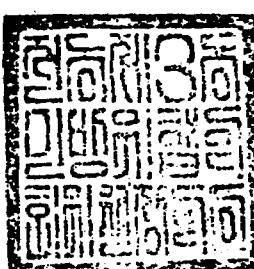
33~28 제 533 호

시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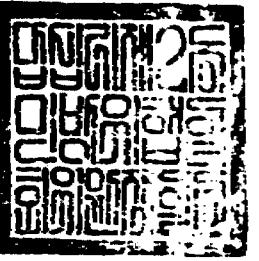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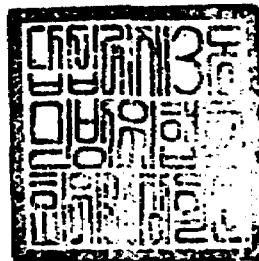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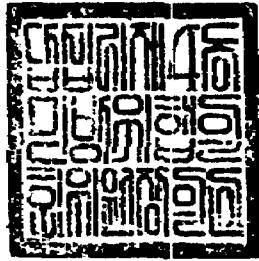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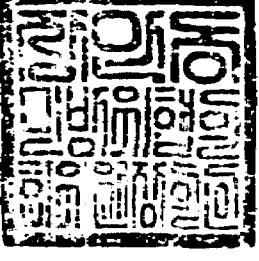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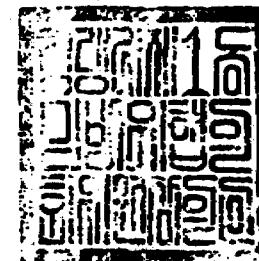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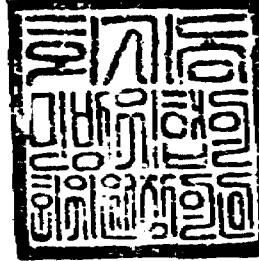
1975.12.11

동민 방위협 회회 위원장인 일정

		
신 설 동	총 두 계 1 동	총 두 계 2 동
		
제 기 계 1 동	제 기 계 2 동	제 기 계 3 동
		
전 농 계 1 동	전 농 계 2 동	전 농 계 3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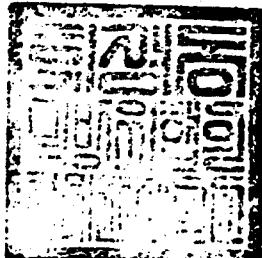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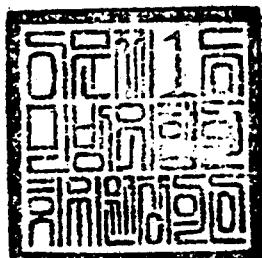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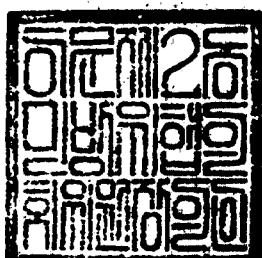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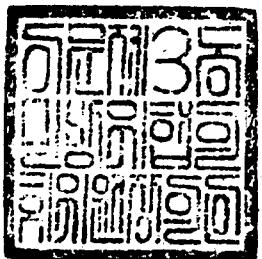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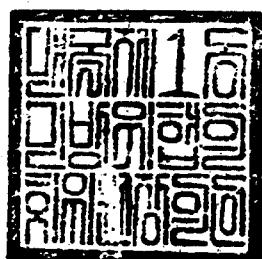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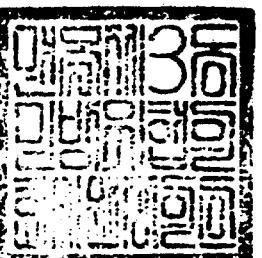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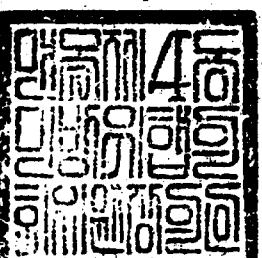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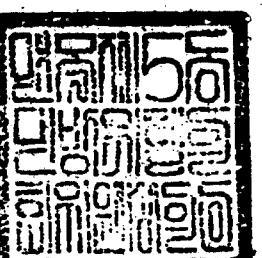
제 533 호 시 보

1975.12.11 33-29

		
천농제4등	당실리제1등	당실리제2등
		
당실리제3등	당실리제4등	장안동
		
세장리제1등	창장리제2등	체가동

33-30 제 533 호 시 보

1975.12.11

		
위 경 동	이 문 제 1 동	이 문 제 2 동
		
이 문 제 3 동	면 육 제 1 동	면 육 제 2 동
		
면 육 제 3 동	면 육 제 4 동	면 육 제 5 동

제 533 호

시

보

1975. 12. 11 33-31

상·동·동	중·화·동	육·동
양·우·동	신·내·동	
사령		<p>농경과 균무를 명함 서부 지방기재 강병태 위생처리장 기원 지방공무원법 제 69조제 1항제 1.2호의 규정에 의거 과연에 처함 윤수 3과 지방기재 서원도 지방공무원법 제 69조제 1항</p>
◎ 1975. 12. 10 시민과 지방약무 일정수 의약과 균무를 명함 시민과 지방축산 이영연		

0176

33-32 제633호

시

보 : 75.12.11

제1, 2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6월에 처함.

대한 산지방전기 기사 김복동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금함.

주택건설사업소근무를 명함.

운수3과 지방기계 기사 서원도
원에 위하여 그차을 면함.

종로구보건소 지방보건기사
보(병리) 전병 흠
서대문구보건소근무를 명함.

서대문보건소 지방보건기사
보(병리) 최수경
영등포보건소근무를 명함.

성북구보건소 지방보건기사
보(병리) 오광배
강남구 보건소근무를 명함.

동대문보건소 지방보건기사
박종오
종로구보건소근무를 명함.

강남구보건소 지방보건기사
전필형
중구보건소근무를 명함.

마포구보건소 지방보건기사
강영안
용산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 1975. 12. 11

도봉구 지방행정기사 박양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소 청심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5.8.28 도봉구인사위원회

징계처분(파면)을 동일자로
변경전체에 처함.

성동구근무를 명함.

◎ 1975. 12. 15

성북구 지방행정기사 김영선
비상계획판보과관실 근무를 명함.

관악구 지방행정기사 규선
비상계획판보과관실 근무를 명함.

마포구 지방행정기사 강태웅
시정개발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도봉구 지방행정기사 김영희
시정개발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도봉구 지방행정기사 고준기
조경과근무를 명함.

성동구 지방행정기사 이영석
종로구 근무를 명함.

마포구 지방행정기사 이상설
성북구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기사 김익환
보건소

제 533 호

시

보

75.12.11 33-33

축산물위생검사소 균무를
명함.

마포구 주거방정자 김영기
동대문구 보건소근무를 명함.

서 울 특 별 시 장

0177